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추가〉

■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3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3.
3. 회부연월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위탁받아 기금 관리 및 운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단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업무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추가하여 공단의 융자사업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추가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⑤ ----- -.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1. (현행과 같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신 설> 2. ~ 14. (생략) ⑥ ~ ⑨ (생략)	1의2.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 14.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¹⁾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조사·평가 및 홍보
 -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고,²⁾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융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⁴⁾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 5의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5의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 5의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 5의5.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업무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5)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한편,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 기금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⁶⁾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진공에 위탁한 소상공인 융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고시·공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① 융자사업은 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관리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진공에 위탁할 수 있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바,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⁸⁾⁹⁾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융자사업 등 자금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자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3.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제2항, 영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영 제10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융자사업 등 자금 지원 업무는 본래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¹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 제21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외의 방법으로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업무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등은 현행법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설명함.¹¹⁾

1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편성된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책자금운영지원’에 61억6,300만원(2025년)이 반영되어 있으며(2024년 63억8,400만원, 2023년 88억2,300만원), 동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 및 채권 보전 조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융역량 강화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효과 향상”임.(출처: 중소기업부)

11)

<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력 확보·전문성 강화 등 조치 현황 >

구분	상세
인력 확보	2025년 2월부터 공단 지역센터에 65명 추가 배치 * (재원) 「소상공인재기지원」 세부사업 내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내역사업비 (총 46억원) 중 13억원 활용
전문성 강화	- 공단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확대 * 한국금융연수원(신용분석사 등 자격시험 주관기관) 교육과정 수강 지원, 실무자(대출심사역)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공단 자체) 실시 등 - 정책자금 업무 관련 전문자격(신용관리사, 신용분석사, 신용상담사 등) 취득 유인책 실시 * 공단 자체 포상 수여, 인사평가 시 성과점수 반영 등
기타	- 민간 금융기관 협업 * 정책자금 대리대출 비대면신청 관련, KB국민은행 업무협약(1.21.) 등

자료: 중소기업부

문 의 처
02)6788-5465